

2017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참고사항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-418, 419, 420호 관련하여 과제 신청 시 참고사항을 하기와 같이 안내하오니,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- 2017년도 차수별 신청·접수 계획

| 구 분 | | 과제 모집 | 과제 공고/ 사업계획서 신청 | 선정평가 | 협약체결 |
|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수요 조사 | 1차 | 1~3월 | 4월 | 5월 | 6월 |
| | 2차 | 3~5월 | 6월 | 7월 | 8월 |
| | 3차 | 5~7월 | 8월 | 9월 | 10월 |
| 기업 제안 | 1차 | - | 1~2월 | 3월 | 4월 |
| | 2차 | - | 3~4월 | 5월 | 6월 |
| | 3차 | - | 5~6월 | 7월 | 8월 |
| | 4차 | - | 7~8월 | 9월 | 10월 |

- 상기 차수별 접수공고 일정은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잔여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.

- 차수별 지원예산이 별도 배정된 것이 아니므로 **과제 접수 및 선정 현황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조기소진 될 수 있습니다.(모든 세부과제에 동일하게 적용됨)**

* 예 : 1차 국내수요처 접수공고를 통해 당해 연도 국내수요처과제에 배정된 정부출연금이 완전 소진 된 경우 2차 접수공고 진행 안 됨

□ 신청방법

-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.

-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“제출완료”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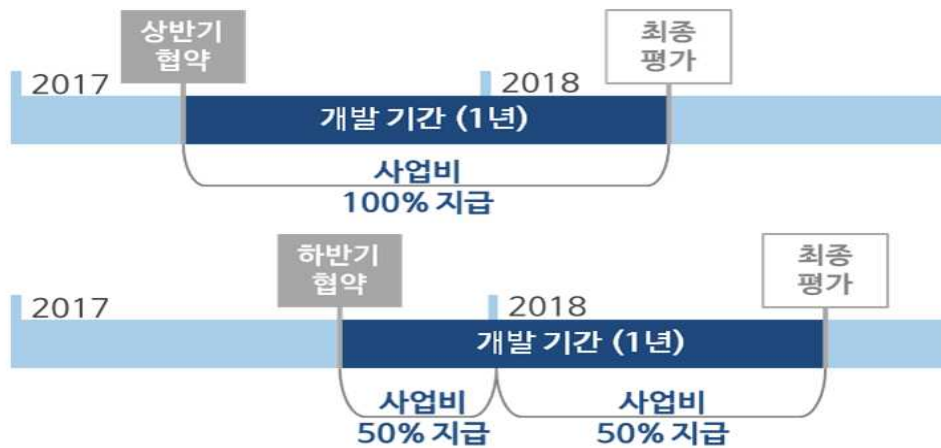
* 제출완료 후 수정할 경우 반드시 다시 한 번 “제출하기”를 클릭한 후 확인 필요,
마감일 기준 “접수증”이 있더라도 “제출완료”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 취소

2.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급 방법(2017년 신규 선정 과제만 해당)

□ 개발기간이 1년 이하인 과제

- 상반기 협약 : 사업비 100% 지급
- 하반기 협약 : 사업비 50% 지급

예시 I. 개발기간 1년인 A업체일 경우



□ 개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과제

- 상반기 협약 : 1차년도(개발 시작일 부터 12개월 이내) 사업비의 75% 지급
- 하반기 협약 : 1차년도(개발 시작일 부터 12개월 이내) 사업비의 50% 지급

예시 II. 개발기간 2년인 B업체일 경우



3. 1억 원 이상 고가 연구시설·장비의 통합심의

1억 원 이상 고가 연구시설·장비 구축 계획이 있으신 중소기업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2016년 7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하는 범부처 차원의 도입심의 시행중 입니다.
- 도입심의회는 1월, 12월만 월 1회 개최되며 2월~11월까지는 월 2회씩 연 22회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- * 도입심의 연간일정 <http://red.zeus.go.kr/schedule/event> 확인요망
- 통합심의 신청 방법
 - ① RED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(<http://red.zeus.go.kr>)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심의 일정 확인 → ② 심의일 선택(상시접수) → ③ 발표자료 등록 → ④ 사업 및 장비 발표(심의)
- 문의처 :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
(홈페이지) <http://red.zeus.go.kr>
(전화번호) 1670-0925 또는 042-865-3934
(전자메일) red@nfec.go.kr
- 유의사항
 - ① 장비심의회는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하려는 주관기관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합니다.
 - ② 통합심의회에서 부적합(구축 불가) 판정 받은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합니다.
 - * 심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의회에서 부적합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시설·장비를 사업비로 구축한 경우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하여 환수 처리함